

사

기안용지

문류번호 문서번호	지운181-2009	(전화번호 2031)	선결규정	조항 선결사항
처리기간		1515	시	장
시행일자	83. 6			
보존연한				
보조기관	부시장 소장 운수과장	공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	부부담당관	결재 1983.6.29 시장
기안책임자	박문규		고시제 328	검열 1983.6.30 지하철건설본부장
경유 수신 참조	국안참조			
제목	지하철 2호선 3.4단계 역간영업 거리 및 역명고시			
제1안	내부결재			
	지하철 2호선 3.4단계 구간 개통에 대비하여 철도법 제7조에 따라 역간 영업거리 및 역명을 별첨과 같이 고시 하므로서 영업준비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.			
첨부	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3.4단계 구간 역간영업거리 및 역명고시 (안) 1부. 끝.			정서
제2안	관인			
수신	서울특별시			
참조	공보관	발신	지하철운영사업소장	
제부	동건			발송
	지하철 2호선 3.4단계 구간 역간 영업거리 및 역명이 별첨과 같이 결정 되었으니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원본대조필



기안인 지하철운영사업소장 박문규

정리관 박영호



205-25(2-1)A(강)  
81. 12. 18 승인

정직 질서 창조  
230

150mm x 216mm (국제표준용지) 70g  
단 정(1.5X) 000매

○ 검토방향

- 안팎
  - 지외동 (영등포동, 영등포동, 영등포동, 영등포동)
  - 가림동
  - 전동, 지외, 이수동
- 회의
  - 공공(거점)동
  - 대학동

○ 관계기관 협의

- 교통국
- 지하철건설본부
- 지하철운영사업소
- 9개구청(중구, 서대문, 마포, 영등포, 구로, 동작, 관악, 강남, 성동)
- 지하철공사
- 철도청

○ 회의 의

- 일시 : 83. 6. 11.(토) 11:00
- 장소 : 교통국 상황실
- 참석자 : 교통기획과장외 13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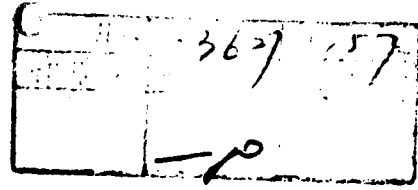
[ 검토 의견 ]

[권식]영명	고시안	의견
경마장	북십	<p>○ 상동구청장</p> <p>[ 북십: 유서깊은 유원지로 시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므로 건의하였으나 경마장: '84년 이전 계획은 있으나 유동적이어서 연행과 동일사용</p>
[하대	[하대	<p><b>한양대</b></p>
하왕십리	왕십리	<p>○ 철도청장</p> <p>왕십리: 철도청 왕십리역과 경합되므로 매표업무의 혼돈우려</p> <p>운영사업소장: 철도청 왕십리역과 동일위치에 있으므로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매표업무 및 이용 시민 혼란 예방</p>
상왕십리	상왕십리	
[신당	[신당	
을지로6가	서울운동장	<p>○ 지하철공사 사장</p> <p>서울운동장: 2호선(을지로6가)과 4호선(서울운동장) 교차역으로 역명통일</p>
을지로4가	을지로 4가	
을지로2가	을지로 3가	<p>○ 중구청장</p> <p>을지로3가: 주역세권이 을지로 3.4가 임</p> <p>지하철공사 사장</p> <p>을지로3가: 2호선(을지로2가)과 3호선(을지로3가역)이 교차되는 역으로 역명통일</p>

조선시대	고시안	의
읍지포입구	읍지포입구	
서초	서초	
방백	방백	
사당	사당	
낙성대	낙성대	
서울대입구	서울대입구	네거리 이름?
봉천	봉천	
신림	신림(동)	<p>°철도청장</p> <p>신림동 : 철도청 중앙신원주역을 지나 신림역 이 있으므로 <del>신원주역</del>의 혼돈우박</p>
신대방	신대방	
공단	공단	<p>1983.6.29 시장</p> <p>구로공단</p>
신도림	대림	<p>°영동포구청장</p> <p>대림 : 80.4.7. 동명청이 대림동으로 변경</p>
문백	문백	
문백3가	문백3가	

건설역명	고 시 안	의	거
당산 3가	영등포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등포 구청장</li> </ul> <p>영등포구청장 : 역사위치가 구청앞에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편의제공</p>	
당산 5가	당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등포 구청장</li> </ul> <p>당산 : 당산동 입구에 위치하여 이용승객의 이해편리</p>	
합	정	합	정
동	고	동	고
신	촌	<p>지하(신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철도청장</li> </ul> <p>고위선구간 서울역-수색사이 기존 신촌역이 있으므로 동일 명칭변경 사용 요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하철운영사업소장</li> </ul> <p>지하신촌 : 철도청구간 고위선 서울-수색사이 신촌역이 있으므로 <del>신촌역</del> 및 이용시민 편의 제공</p>	
이	대	이	대
아	역	아	역
총	정	총	정
식	정	식	정

서울특별시 제 호



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3.4단계 역간 영업거리및역명고시(안)

철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 2호선 3단계 (서울대입구 - 을지로입구)의 역간 영업거리 (14.6 Km)와 4단계 (을지로입구 - 서울대입구)의 역간 영업거리 (19.8 Km) 및 역명을 별첨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.

1983. . .

서울특별시장



첨부 : 지하철 2호선 3.4단계 역간 영업거리 및 역명

3단계 구간 역간 역간키로 미요표  
 =====

환산역간거리	환산누계거리	역	명	비	고
0.7	0.7	교	대	기	전
1.7	2.4	서	초	신	전
1.6	4.0	방	백	"	"
1.7	5.7	사	당	"	"
1.7	7.4	남	정	"	"
1.0	8.4	서울대	입구	"	"
0.8	9.2	정	수	기	전
1.1	10.3	북	선	신	전
1.0	11.3	한	양	"	"
0.8	12.1	왕	신	"	"
0.9	13.0	상	왕	"	"
0.9	13.9	신	당	"	"
1.0	14.9	서울운동장		"	"
0.6	15.5	을	지로 4가	"	"
0.8	16.3	을	지로 3가	"	"
0.8	17.1	을	지로 입구	"	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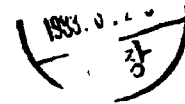


칙 도 법

제 7 조 (운임 요금 기타 운송 조건의 고시)

운임,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은 관계역에 늦어도 그 시행 1주일

전에 고시하여야 한다.



# 2号線 運行表

